



종교단체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 중재위원회 전체 조정사건 중 종교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728건으로 약 13.9%를 차지했다. 신청인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최다 신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A 교단은 자신의 단체를 반사회적 교리를 가진 종교집단이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또 B 교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점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 역시 모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종교단체 간 분쟁 시에 중재부는 고민에 빠진다. 교리는 신념과 종교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이라니. 과연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보도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교리나 교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중재부에서 정정보도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견·논평이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종교적 보도라 하여 다르지 않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

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례고도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의 신도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거나 다른 종파의 신도에게 반대되는 종파의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은 계속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아마도 특정 종교인이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언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A와 B 두 교단에서 신청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자. 한 언론사는 A 교단의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반면, 다른 언론사는 B 교단의 어떠한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여 조정이 결렬됐다. B 교단의 이단성은 주요 교단의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비록 중재부가 이단 논쟁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대 종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배타적인 자세는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이 전달되어야 하고, 반대 종파에도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1960년대 가톨릭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신자들만의 교회가 아닌 사회와 함께 하며 타종교인까지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김 추기경의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 중 “사랑”에 대한 글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